

[기자회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 일시 : 2024. 5. 28(화) 오전 9:30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식 순

- 사회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 발언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김수정** 민언련 공동대표  
**이동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  
**김성순** 민변 변호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독재’ 강화하는 ‘입틀막’ 규칙개약을 당장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다.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에서 방송·정보통신 심의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은 과거완료형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8월부터 야권 추천 위원 해촉이 이어지며 9인으로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 추천 위원의 수는 법령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했다. 파행도 이런 파행이 없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낙하산 류희림 위원 위촉이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군사작전 하듯 강행한 호선에서 그들만의 의결로 ‘류희림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을 겨냥한 심의폭주를 일삼으며 언론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제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라는 외피마저 포기하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이른바 ‘입틀막’ 규칙 개약을 통해서다.

규칙이 개약되면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고나 제지, 나아가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할 수 있다. 회의중지 후 자정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고 안건은 폐기된다.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청부민원 의혹을 언급할 때마다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핑계로 해당 발언을 제지해왔다. 청부민원 안건이 공식 상정된 회의에서는 임의로 중도 퇴장한 후 돌아오지 않고는 ‘안건이 폐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으로 궁색하고 치졸한 언행이다. 개정 규칙은 과거 류희림 위원장의 이런 황당한 언행을 정당화해주고, 합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과정을 말살할 것이다.

규칙 개정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 의결이 가능해 2인만으로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이라면 여권 추천 위원 2인만의 의결로 논란된 뉴스타파 인 용보도 민원 건에 대한 긴급심의 결정도 옹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시켜 여권 추천 위원들만의 운영을 정당화해준다. 현재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두 명의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운영된 상임위원회는 편파·표적·월권 정치심의 상징인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탄생시킨 주역이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9인 위원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언론과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고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동의 없이 설치한 게 대표적이다. 일반 안건 제의 규정을 신속심의 규칙이라며 마음대로 준용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단체도 본인 입맛대로 정해 편향적으로 구성했다. 마땅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사안이지만, 위원장 권한이라 우기며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합의제 기구의 외피도 벗어던지고 무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공식 선언이 바로 ‘입틀막’ 규칙 개정이다.

규칙 개정이 강행되면 ‘9인 위원’에 이어 ‘합의제 기구’ 역시 과거가 된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는 민간독립 심의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근거까지 급속히 훼손시켰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주범인 류희림 위원장의 임기는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태는 멈출 줄 모른다.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을 위협하고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지금이라도 청부민원에 대해 낱알이 싹토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더 늦기 전에 정치심의와 언론장악의 진상을 밝히고 사퇴하라. 언론장악 저지공동행동은 전국 9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해 시민들과 연대해 류희림 위원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설령 운 좋게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죄과를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어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

2024년 5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24. 5. 3.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24-4호, 제2024-5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24-4호)에 대한 의견

#### 가. 안 제7조 제3항에 대한 의견

1) 안 제7조 제3항으로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그 개정이유로 “현행 규칙에는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음.2) 그런데, 위 개정안과 같이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때에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속개하지 않고 자정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기 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되는 것인지 모호함.

3) 만약 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상정되었던 안건이 자동폐기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위원장이 정회선언하고 자정까지 속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건을 폐기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는 사실상 위원장에게 심의 안

건 폐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초래됨.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고 함)의 안건은 방심위의 자체 모니터 결과 및 시청자 등이 제기한 민원내용에 대한 사무처 검토를 거쳐 문제가 되는 방송내용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되는 것이고, 상정된 안건은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위원장에게 안건을 임의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관련 법령체계에 반하여 부당함.

4) 따라서, 위 개정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개정이유와 달리 그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새로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자동 종료된 회의에서 미처리된 안건은 차회 회의에 자동산정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 나. 안 제7조 제7항에 대한 의견

1) 안 제7조 제7항으로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그 개정이유로 “회의의 원활한 운영,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합의제 기관의 정신에 입각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제시함.

2) 그러나, 정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 시간을 정하는 회의운영규칙이 존재하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고 함)가 유일함.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서 위원장이 타 위원의 발언시간을 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음. 이는 위 정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안건들의 성격상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개진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함) 제21조 각호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의 직무의 성격으로 볼 때, 위원들에게 충분한 발언시간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더욱이, 방심위 위원 9명 중 6명은 정부·여당측이 3명은 야당측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므로, 방심위 위원장이 정부·여당측에 우호적인 안건에 대한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실상 야당측의 의견개진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형평성이 담보된 심의절차가 보장될 수 없음.

3) 한편, 위 개정안 참조자료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항을 참조법규로 위 개정안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항은 2023. 11. 6. 방통위에서 개정

한 것으로서, 최근 방통위 스스로 개정한 조문을 방심위가 참조하여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에 그 타당성이 부여될 수 없음. 또한, 개정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통해서 부적절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별도로 모든 위원의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더불어,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통해 의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나, 국회법 제106조의2에서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발언권 보장을 위한 조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4) 따라서, 위 개정안은 폐기하거나, 위원장의 발언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기타 위원들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을 위한 규정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II.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4-5호)에 대한 의견

### 가. 안 제4조 제2항에 대한 의견

1) 안 제4조 제2항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인 이하(기존규칙 5인 미만)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그 개정이유로 “소위원회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통상적으로 5인 위원회 또는 3인 위원회로 구성·운영돼왔음을 고려하여, 3인 이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대해서만 가중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적용함. 소위원회 의결 등 관련 규정 보완으로 회의 개최·의결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제시함.

2) 그러나, 방통위법에서는, 방심위는 9인으로 구성하고(제18조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2조 제3항)하되, 다만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하였던 것이고(제22조 제5항), 방통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방심위 소위원회 위원을 5인 이내로 구성하고(제2조 제2항)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제4조 제1항),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는 출석인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제4조 제2항), 소위원회가 5인미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그 의결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던 것임.

3) 실제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신설을 논의한 2009년 제19차,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내용을 보면, 위 조항의 신설 취지는 ‘방통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소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가 위임한 소위원회 의결의 법적 정당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5인)로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되, 불가피하게 5인 미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4)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및 그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소위원회가 5인 또는 3인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으므로, 소위원회 개최, 의결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편의적 목적’으로 임의로 소위원회의 전원합의

가 요구되는 요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더욱이, 위 개정안과 같이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향후 불가피하게 4인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전원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일부 협조적인 위원들(더욱이 소위원회는 방심위 위원장이 지명하고 있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참여만으로 그 심의·의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소위원회에서의 의결요건을 강화한 취지를 잠탈하게 됨.

5) 따라서, 위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이 타당함. 끝.

## 붙임 2

### 민주언론시민연합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공고 제2024-4호)에 대한 의견

##### ● 회의 자동 종료 규정 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② (생략) <신 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

##### ○ 민언련 의견 : 반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7조 제3항을 신설한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기본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는 합의제 기관의 정신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느냐가 회의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회의 안건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함.

- 기본규칙안 제7조 제3항이 반영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불리한 안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자동 종료되어 민주적이고 시의성 있는 안건 논의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음.

##### ● 위원 발언시간 제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신 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⑦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간 발언시간 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 ○ 민언련 의견 : 반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 등을 위해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규칙안 제7조 제7항을 신설하였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음.

-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해서 합의제 기관의 정신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함이 개정 취지라고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발언 형평성은 동의하기 어려움.

정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위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회의규칙은 2023년 11월 6일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이 유일하며, 이를 주도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자진 사퇴함.

국회법에서는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나 엄격하게 시간 기준과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위원장이 시간 기준과 사전협의 절차 없이 위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한다면 소수 의견이 묵살될 우려가 높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라고 한다면 위원들이 충분한 발언과 토론시간을 통해 합리적인 심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칙이 개정돼야 함.

● 회의 질서 유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p>제7조의2(회의의 질서 유지) ①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p> <p>③ 위원은 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li> <li>2. 폭력의 행사</li> <li>3.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함부로 발언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li> </ol> <p>④ 위원회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민언련 의견 : 반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기본규칙안 제7조의2를 신설하게 된 취지라고 하나 ‘합의제 위원회’ 운영에 해당 규정이 적절한지 이해하기 어려움

- 기본규칙안 제7조의2와 같은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을 갖고 있는 국회법(제145조)은 과거에 법안 통과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빈발했던 국회 상황을 반영한 법 규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위원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조항임.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운영방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규칙안 제7조2와 같은 질서 유지 조항이 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은커녕 소수의견과 토론의 기회를 억압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매우 높음.

2.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공고 제2024-5호)

● 의결정족수 요건 변경 <개정>

현행	개정안
<p>제4조(의결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4조(의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3인 이하로</p> <p>-----</p> <p>-----</p> <p>-----</p>

○ 민언련 의견 : 반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5인 미만의 소위원회에 대한 의결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중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 및 의결정족수(출석위원 전원 찬성)을 규정하고 있어 3인 이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대해서만 가중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조 제2항을 마련했다고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 개정 취지에서 언급했듯이 소위원회가 통상적으로 5인 위원회 또는 3인 위원회로 구성·운영되어 왔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회의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음.
- 소위원회가 의결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인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며, 불가피하게 이와 같이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원합의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이 현행 규정의 신설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상임위원회 구성 변경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상임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는 <u>위원회</u>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u> -

○ 민언련 의견 : 반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등 3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 1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야당 몫 상임위원임.
- 현재 국회의장이 추천한 야당 몫 상임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상황에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등 여당 몫 2인만으로 상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단체 선정과 재심안건 심의 주요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는데 야당 몫 위원을 참여시키지 않는 여당 몫 2인만의 일방적인 구성이 발생시킨 문제는 편파 심의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단체 결정으로 표면화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조하는 합의제 기관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여당 몫 위원 2인으로만 구성되는 비정상적인 상임위원회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한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0조 제2항과 같은 개정은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정당할 우려가 있음
- 합의제 기관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3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 개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임위원이 결원이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인 더 긴급하다고 판단됨.

## 붙임 3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4-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반대의견

#### 1. 개정이유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효율적 회의 진행 등을 위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게 하며, 회의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합의제 정신에 입각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반대의견 및 사유

○ 의견 : 반대

○ 사유 :

- 회의 자동 종료 규정, 위원 발언 시간 균등,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 신설은 모두 합의제 기구로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취지를 훼손하고, 회의의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반대함.

- 세부적으로 회의 자동 종료 규정은 위원장이 불리한 안전이나 원하지 않는 안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위원의 발언시간 균등 건은 위원장이 타 위원의 발언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장이 소수 위원들의 문제제기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결과적으로 쟁점 안전에 대한 토론과 숙의를 저해할 가능성 높음.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 건은 합의가 필요한 현안,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담을 회피하다 회의장을 이탈해도 폐회를 선포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저해할 우려 있음. 삭제가 바람직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의제 취지를 살리고 민주적 의사진행을 돕기 위한 규칙 개정을 위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4-5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1. 개정이유

5인 미만 소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현실화하고,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현실화·안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반대의견 및 사유

○ 의견 : 반대

○ 사유 :

- 소위원회 의결의 정당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5인)로 구성한다는 취지를 훼손함.

- 현재도 여당 추천 위원들로만 상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운영의 독단적 운영 문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상임위원 결원 시 이를 대처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의제 취지를 살리고 민주적 의사진행을 돕기 위한 규칙 개정을 위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함.

## 붙임 4

###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가 입안예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합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 1) 예고사항과 의견

구분	내용	의견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③항, ⑦항 신설	③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반대
제7조의2(회의의 질서 유지) 신설	①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2. 폭력의 행사 3.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함부로 발언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④ 위원회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반대

##### 2) 구체적 사유

##### ○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③항, ⑦항 신설의 건

-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 구조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보다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보다 자유롭게 발언되고 그에 따른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위원장이 더 맞는 소임이라는 판단임.

-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⑦항의에서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회 구조에서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타 위원들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발언을 분배해야지 위원별 의사 발언의 형평성을 맞추는 자리가 아니라는 입장임. 이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합의제 기구의 설립 취지에 반하므로 삭제되어야 함.

-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종료하는 ③항은 폐회 선언 없이 정회 또는 회의장이탈을 통해 안건을 자동 폐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심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거나 안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 제7조의2(회의의 질서 유지) 신설의 건

- 위원장의 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이견은 없음. 다만, 회의 질서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이 같은 규정은 다른 심의위원들의 심의·의결 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함.

- 특히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원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회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2.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1) 예고사항과 의견

구분	내용	의견	
제4조제2항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u>5인 미만</u> 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u>3인 이하</u> 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반대
제6조의2(다른 규칙의 준용) 신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없음
제20조(상임위원회)의 구성) 개정	②상임위원회는 <u>위원회 위원 3인</u> 으로 구성한다.	②상임위원회는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u> 으로 구성한다.	없음

2) 구체적 사유

○ 제4조제2항 개정의 건

- 현행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결 등)는 아래와 같음.

제4조(의결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5인)와 광고심의소위원회(5인), 통신심의소위원회(5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3인)임. 이렇듯 소위원회는 통상 5인으로 구성해 운영돼왔음. 다만, 미디어 환경과 그 피해를 우려해 새롭게 구성됐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성이 낮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만이 그보다 적은 3인으로 구성돼 있음.

- 이는 반대로 방송 제작자들의 자율성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소위원회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전제로 운영돼 왔다는 의미임. 이를 기준으로 보면, '5인' 그리고 '5인 미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규칙을 개정할 사유를 찾기 어려움.

- 만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인 이하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자칫 5인으로 구성돼 왔던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이 상황에 따라 구성원이 변경(4인 등)되면서 의결정족수가 낮아질 경우, 정부여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심의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제재하거나 국민들의 게시물을 삭제하게 될 수 있음.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방통위법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 결정임.

## 붙임 5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공고 제2024-4호)에 대한 의견 제시

#### 1. 회의 자동 종료 규정 : 반대

- 2024년 1월 8일 열린 제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정기회의에서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한 3개 안건이 논의되었음. 하지만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이후 속개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이후 열린 회의가 제1차 정기회의의 속개인지 제2차 임시회인지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고, 1차 정기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안건의 처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때문에 회의 종료에 따른 차수 변경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으나, 위원장이 기피하는 안건 논의를 차단하는 규정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거나 미처리 안건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2. 위원 발언시간 제한 : 반대

-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기구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 해당 조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고 하나, 다른 정부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음.
- 방심위가 법률에 의거해 개별 사안의 적용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사이에 건전하고 활발한 토론을 위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방심위의 취지임을 고려하면 위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 3.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 : 반대

- 「국회법」에서 규정한 '질서유지' 조항은 국회에서 법안 및 예산안 통과 등을 두고 여야가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의장석에 난입하는 등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행위를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진 것임.
- 하지만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로 위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데도 '질서유지 조항'을 넣는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함.
- 또한 현재 방심위 회의 운영 방식이 독선적이라는 내외부의 비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실질적인 회의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다기보다 일부 위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차단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상의 이유로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공고 제2024-5호)에 대한 의견 제시

#### 1. 의결정족수 요건 변경 : 반대

- 해당 조항을 신설한 연원을 따져보면, 위원회가 위임한 소위원회가 의결의 정당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과반(5명)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가피하게 5명 미만으로 구성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운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
-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최소 구성인원이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으로도 다수결 의결이 가능해져 애초 규정을 마련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삭제가 필요함.
- 또한 개정 이유에서 설명하듯, 소위원회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통상적으로 5인 위원회 또는 3인 위원회로 구성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현행 규정으로도 운영에 무리가 없음.

#### 2. 상임위원회 구성 변경 : 반대

- 2023년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前위원장과 이광복 前위원장을 해촉한 이후, 방심위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지금까지 국회추천 상임위원이 위촉되지 않고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2인만으로 운영되고 있음.

- 상임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단체를 선정하거나 재심 안건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구성되 비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면 비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음. 오히려 비정상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3명 이상으로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상의 이유로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합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추진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합의제라는 상위 법령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원장 등 다수 여권 위원에 권한을 집중하고 소수 야권 위원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방해할 위험이 큼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심위의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1. 위원장의 위원 발언시간 제한의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은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장 및 다수 여권 위원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들의 발언을 무력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위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하는 만큼, 위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심도 있게 토론하여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도 모자랄 판에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제대로 된 토론이나 반대 의견을 막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실제 콘텐츠 심의를 하는 그 어떤 기관에서도 위원장에게 발언시간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곳은 없습니다. 특히 현재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9인으로 구성한다’는 법률을 위반하고 여권 6인, 야권 2인의 비정상적 구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에게 발언시간 제한 권한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은 야권 위원들의 의견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시도임이 명확합니다.

### 2. 회의 자동 종료 규정의 문제

방심위는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기본규칙에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실제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1월 제1차 방심위 정기회의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던 중 일방적으로 정회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속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가 1차 회의의 속개가 아닌 2차 회의 개최로 처리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 종결되지 않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안건은 자동 폐기된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이처럼 위원장 등이 원하지 않은 안건이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정회한 뒤 속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를 종료시킬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3.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의 문제

가장 악용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 위원에게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거나,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위원장이 질서 유지를 명분 삼아 자의적으로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회의를 중단할 수 있

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소수 야권 위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답변을 피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방식으로 회의를 파행시킨 바 있습니다. 9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생긴 일도 없었거니와, 치열한 논쟁은 오히려 방심위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회의의 중지와 폐회마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 4.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요건 변경의 문제

방심위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요건을 변경함으로써 소위원회의 의결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시행령 제10조 1항은 소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5인으로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소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공신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칙 4조 2항에서 예외적으로 5인 미만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해 의결 조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4인 체제 소위의 경우 다수결로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3인 이하’로 개정해 4인 체제 소위의 다수결 의결을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4인 체제’의 방송소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와 관련해 신속심의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명백한 규칙 위반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제 규칙 개정으로 의결 조건을 완화해 내놓고 다수 여권 위원들이 소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 5. 결론 - 방심위의 독재적·편파적 운영 시도에 반대합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는 그 구성부터 비정상적이며, 심의·의결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설립 취지는 사라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심의가 진행되고, MBC 등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별점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을 필두로 다수의 여권 위원들은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위원회 운영에 앞장서며 합의제 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5기 방심위가 방심위 기본규칙 등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금의 파행을 제도화함으로써 방심위의 악행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위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 탄압에 앞장서는 비극적인 상황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심위의 독재적·편파적 운영을 규탄하며, 규칙 개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류희립 방심위의 위원회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의견서

우리 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원회가 지닌 합의제 기구로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입틀막’ 규칙이며, 위원회 회의의 민주적 의사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큰 개악으로 규정하며, 류희립 방심위가 추진하는 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

### 1. 총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차별과 제한 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이다. 표현의 자유의 결과물인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정보 등 여러 형태의 표현물은 이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다양한 표현들이 발화되고 교환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표현물에 대한 제3자에 의한 공적 제한은 다수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며, 이는 곧 내용심의를 하는 방심위가 합의제로 운영되는 원리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합의제의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공적 기관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 지부는 류희립 방심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규칙 개정안은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왜곡시켜, 의미 있는 목소리는 봉쇄되고, 특정 진영에 유리한 일방의 의견만 유통되는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의도가 반영된 내용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개정안은 방심위의 기본적인 운영 철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합의제라는 껍데기만 유지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심의위원의 심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류희립 방심위는 그간 방송언론 및 인터넷 생태계에 적지 않은 교란을 발생시켰다. 청부민원을 토대로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유례없는 최고 수위의 징계금을 방송사에 부과하였고, 불명확하고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근거해 ‘바이든-날리먼’ 보도에 대한 졸속심의를 하였다. 권력을 풍자하는 목적의 짜깁기 영상인 윤석열 대통령의 편집영상을 ‘딤페이크’라 주장하며, 시정요구하기도 하였다. 과잉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에 따른 부작용으로 류희립 방심위 심의와 관련된, 세금으로 충당되는 소송비용이 유례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한 류희립 방심위는 내·외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한 자성 없이 합의제 기구로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지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위원회 규칙 개정안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1. 개정안 제7조제3항 ‘위원장이 회의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동 규정은 여권 추천 위원 우위의 류희립 방심위에서 류희립 위원장 또는 다수 위원들에 의해 소수 위원들이 제의하는 심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속개 없는 고의적인 ‘정회’ 선언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차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다만, 「국회법」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산회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차기 회의에서 해당 의원에 먼저 발언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당해 회의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미처리된 안건은 차기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방안과 함께 동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2-2. 개정안 제7조제7항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동 규정은 「국회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회 내 위원회 위원장에 부여된 의사정리권 중의 하나인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운영형태는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운영형태와 전혀 다르고,

법안 논의 및 통과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의 장시간 발언을 방지하고, 입법기능을 활성화하는 취지의 의사정리권 규정을, 내용심의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방심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원의 첫 번째 발언에 한해 제한을 하고 있는 반면, 동 규정은 심의위원의 모든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과잉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국회법」 제106조의2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신속처리 안건지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게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토론을 통해 쟁점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제한 토론’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등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위원회 규칙 개정안은 심의위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동 규정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심의위원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합의제 기구의 운영 원리와 상치되며, 합리적 심의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충분한 발언시간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동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2-3. ▲개정안 제7조의2제1항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개정안 제7조의2제2항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동 규정은 「국회법」 제1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회의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명시한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알려져 있다시피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 등을 두고 회의장 점거, 의장석 난입 등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국회법」상의 질서유지권은 필요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역대 방심위에서 심의위원 간 물리적 충돌은 전혀 없었고, 9인 구성의 방심위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300명으로 구성된 국회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류희림 방심위는 심의위원 간 물리적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보다는 동 규정을 근거로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불리한 의결에 제동을 걸면서 회의를 즉각 폐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근거로 동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 3.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3-1. 개정안 제4조제2항 ‘3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인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은, 5인 구성의 소위원회 의결을 9인 구성의 방심위 의결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반인 5인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과거 심의위원들의 논의결과를 기초로, 5인 구성의 소위원회 의결의 법적 정당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제도적 장치이다(2009년 제19차, 제20차 정기회의 회의록 참고). 하지만 동 규정은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4인 구성의 소위원회에서도 다수결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류희림 방심위의 심의 폭주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4인 위원 구성이었던 제31차 방송소위(2023.9.5.)에서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신속심의를 제안할 당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이 현행 규정을 위반하고 표결을 강행하여, 차기 회의인 제32차 방송소위(2023.9.12.)에 뉴스타파 인용보도 안건이 상정되도록 한 조치를 류희림 방심위가 소급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보인다.

3-2. 개정안 제20조제2항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동 규정은 상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조건을 현행의 ‘위원’에서 ‘상임위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여권 추천 위원 2인으로만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등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함께 논의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

## 붙임 8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4-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1. 개정이유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효율적 회의 진행 등을 위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게 하며, 회의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합의제 정신에 입각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반대의견 및 사유

○ 의견 : 반대

○ 사유 :

①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규칙 개정임.

② 발언 시간 균등의 권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막아버리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야권 추천 위원이나, 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특정 위원의 발언을 막아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전체합의에 의한 결정이라는 방심위의 의결방식을 훼손하는 규칙 개정임.

③ 불리한 상황에서 대답을 회피하다 회의장을 이탈해도 위 규정에 근거해 폐회를 선포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4-5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1. 개정이유

5인 미만 소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현실화하고,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현실화·안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반대의견 및 사유

○ 의견 : 반대

○ 사유 : 현재도 2인의 상임위원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적 문제를 은

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악용될 소지가 큼. 알방적인 상임위 운영이 될 가능성 또한 높음. 상임위원 결원 시 이를 대처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붙임 9

### 진보연대

귀 위원회에서 입안예고한 ‘방송통신심의위 기본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각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다 음

가). 위원장이 위원 발언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위원장이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위원에 대한 경고나 제지, 회의 중지 및 폐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위원장이 소수 위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발언 기회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위원장이 원치 않는 안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회’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다). 4인 구성 소위원회에 대해 다수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 요건을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기존 4인 구성 소위의 규칙 위반에 대한 소급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이고, 또 소위원회 의결의 최소 정당성 보장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라). 상임위원회 참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비정상적 운영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참여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공고 제2024-4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공고 제2024-5호)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공고 제2024-4호)

1) 회의 자동 종료 규정 신설(개정안 제7조 3항 신설)

- 내용 :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의견 : 반대 및 철회 요구

- 이유 : 방심위의 위원은 <방통위설치법>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③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 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할 것임. 이와 같은 위원 구성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신뢰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합의제 정신에 맞는 운영일 것임.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자정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기계적으로 대응시켜 회의를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원장 독단으로 논란이 되거나 치열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안건을 회피하려는 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른바 ‘민원사주’의혹에 대한 전체회의 소집 요구에 응해 놓고 갑자기 취소해 놓고 이에 대해 다시 회의를 개최한 바 없음. 또한 장시간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할 정도의 안건이라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방증임. 미처리 안건의 경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합의제 정신에 맞을 것임. 따라서 이 규정 신설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2) 위원 발언시간 제한 규정 신설(개정안 제7조 신설)

- 내용 :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 의견 : 반대 및 철회요구

- 이유 :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책무를 진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경우, 최대한 정확하고 설득력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임. 특히 방심위원은 9명의 위원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어느정도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서로간 의견차이가 있는 안건의 경우 회의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특정 1인이 회의 시간 내내 발언시간을 독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히며 상대를 설득하도록 발언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임.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위원 1인이 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기구의 필연적 과정일 것임. 다양성이 반영된 정부 위원회 중 위원장이 위원 발언시간을 정하는 회의 운영규칙이 있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서로 참여한 의견 대립이 있는 안건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토론하고 설득해서 합의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합의제 기구로서 제대로 된 운영이라고 한다면 이 조항은 위원장의 독단으로 회의를 운영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어 합의제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철회해야 할 것임.

3)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신설(제7조의2 신설)

- 내용 : 제7조의2(회의의 질서 유지)

①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2. 폭력의 행사

3.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함부로 발언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④ 위원회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견 : 반대 및 삭제 또는 굳이 신설한다면 제7조의 2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정도의 제하에 폭력을 행사할 경우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이유 : 대화와 토론의 방식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는 합의제 기구에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되었지만, 질서유지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보여짐. 특히 ③항 1호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의 모욕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주관적이며, 맥락의존적인 것임. 무엇을 모욕적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다른 논쟁을 불러올 수 있음.

-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일시적 일탈적 상황을 일반화하여 규제일변도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합의제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짐. 철회하여야 할 것임.

2.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공고 제2024-5호)

1) 의결정족수 요건 변경한 제4조

- 내용 : 5인 미만→3인 이하 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견 : 개정반대 및 철회요구

- 이유 : 이 규정은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 전체 위원 9명 중 원칙적으로 소위는 과반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과반도 안되는 4명 이하의 소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 결정의 정당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규정임.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아도 방심위 위원 구성은 방통위법에 따라 9명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이중 3명은 국회의장, 3명은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여야의 구도가 거의 6대 3으로 고정되어 있음. 이런 구성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논쟁적인 안건을 심의할 때, 자칫 일방의 의견이 다수라는 이유로 충분한 토론과, 설득, 숙의 과정없이 방심위 전체의 의견으로 대표될 수 있어 표결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과반으로 소위원회 구성이 안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전원 찬성으로 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의 공신력과 정당성을 보장하려는 조항인데 3인 이하일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더욱 소수위원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어서 이 조항 도입의 취지에 반함. 특히 현행 규정 하인 2023년 9월 5일 황성욱, 허연희, 김유진 위원이 출석한 방송소위에서 이후 최종 과정금이라는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로 의결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의 신속심의 여부를, 반대하는 김유진 위원의 퇴장으로 2명의 여권 추천위원 황성욱, 허연희 위원만의 찬성, 즉 전원찬성이 아닌 다수결로 결정하여 논란이 되었고 야당 추천 위원들의 이 규정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원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4인 이하의 경우 전체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그나마의 합의제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 철회해야 할 것임.

2) 상임위원회 구성 개정 제20조

- 내용 :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 의견 : 개정 반대 및 철회요구

- 이유 : 원래 규정 20조에 따르면 위원 중 3인이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통상 위원장, 부위원장과 야권 추천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왔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야권 추천 상임위원 위촉을 하지 않고 있어 현 방심위 상임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2인으로만 운영되어 범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상임위

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선정, 재심안건 심의 등 중요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번 22대총선 선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위원장, 황성욱 부위원장 2인이 일방적으로 추천단체를 구성해 야권 추천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받는 등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성 등을 훼손했고 합의제 정신조차 몰각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오히려 합의제 기구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2인 체제하에서는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나머지 비상임위원 중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철회하여야 할 것임. 끝.